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를 위한 ALL 바로 저작권 CHECK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를 위한

ALL 바로 저작권 CHECK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SEOUL SOUL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BTF 푸른나무재단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를 위한

ALL 바로

저작권

CHECK

ALL 바로

저작권

CHECK

편집소 소개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으로 죽음을 선택한 아들의 아버지(설립자 김종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이며, UN경제사회 이사회에서 특별 협의의 지위를 부여 받은 '청소년NGO'입니다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푸른나무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스스로넷)은 2000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이자 서울시 유일의 청소년 미디어 특화시설로서 청소년, 미디어,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청소년이 미디어로 건강하게 소통하고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는말

[어렵고 두꺼웠던 저작권 책보다,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저작권 상식]

본 가이드북 <ALL 바로 저작권 CHECK>는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제작자 저작권 연구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청소년미디어제작 과정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 미디어 제작자와 지도자들이 저작권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제작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제작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로부터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인 “저작권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목소리에 주목하여, 이혼 중심이 아닌 실무 중심의 청소년 저작권 가이드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여러분의 무한한 창작 열정을 응원합니다!**

I 내가 원하는 음원, 올바로 허락 받고 써요

- 01 음원을 활용하고 싶다면, 우선 **음원 정보 검색**을 해봐요 8p
- 02 권리자를 찾았다면 **음원 사용 허락**을 받아요 11p
- 03 **외국 음악의 저작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p
- 04 엔딩 크레딧, 이제는 정확하게 **권리자와 출처**를 표시해요 22p

II 트렌드 미디어, 인터넷에서 유행하면 괜찮나요?

- 01 **밈(meme)**, 유명하다고 그냥 갖다 쓰면 안돼요 25p
- 02 유행하는 밈으로 **유튜브 영상** 만들고 싶다고? 26p

III 폰트, 영상 자막 만들 때 특히 조심히 사용해요

- 01 **폰트**: 이용약관을 통해 제대로 사용해야 할 저작물 30p
- 02 안전한 폰트 사용은 **스스로넷**과 **공유마당**에서해요 32p
- 03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 프로그램, 소송으로 이어져요 3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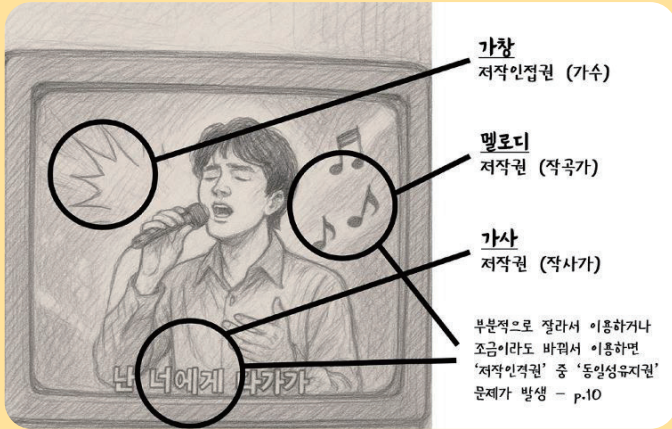
IV 이제는 귀찮아도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세상

- 01 **저작권**,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36p
- 02 누군가 내 **저작권**을 침해했나요? 39p
- 03 **커버(cover)** 콘텐츠도 허락 받고 만들어야 해요 41p

V 저작권 체크리스트 콘텐츠 만들기 전&후 안심 체크리스트 확인해보기

들어가기전에

알아두면 좋은 용어정리



저작권

- 인간이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 만들어 낸 저작물(창작물)에 대해 저작자에게 생기는 법적 권리예요.
- 단순히 베끼는 식으로 최소한의 창작성조차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아요.

저작자

- 저작물(창작물)을 최초로 만들어 낸 사람을 의미해요. 창작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저작권자

-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현재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긴 해요. 다만, 실무적인 저작권자 개념과 달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 창작 직후에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작재산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재산적인 측면에서는 저작자와 별도로 저작재산권자가 생기겠지요?

저작인접권

- 창작물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는 것처럼 저작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과정과 관련해서 생기는 권리에요. 다만, 그 대상은 저작권법을 통해 정해져 있어요.
- 가수, 연주자, 연기자 등은 이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할 수 있고, 사람이 아니라도 방송사와 음반 제작사 등 또한 저작인접권자가 될 수 있어요.

저작인격권

-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내 작품을 함부로 없애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주장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 내 작품에 대한 공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권리에요.
-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는 저작자(창작자)의 고유 권리에요.

저작권재산권

-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로 재산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구체적으로는 사본 만들기(복제), 방송하기(공중송신), 2차 창작하기(이차적저작물작성), 널리 나눠주기(배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전시)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해요. 다만, 저작인격권과 달리 저작권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도 있어요.

신탁 단체

- 신탁은 믿을 신(信)과 부탁할 탁(託)이 결합한 단어예요. 저작권재산권자는 신탁 단체에 저작권재산권 관리를 위탁할 수 있지요. 이렇게 맡겨진 저작권재산권을 바탕으로, 신탁 단체는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권리자들에게 배분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해요.
- 저작권과 관련한 대표 신탁 단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음원, 올바로 허락 받고 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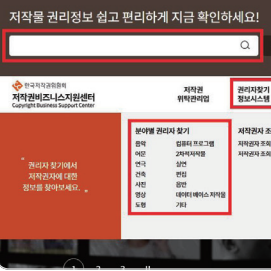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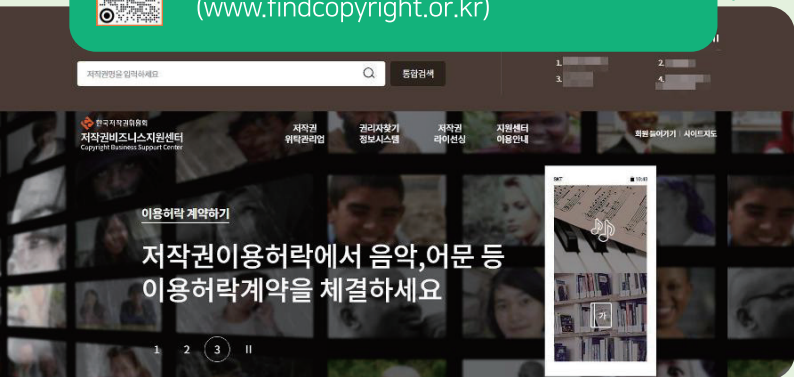
- 01 음원을 활용하고 싶다면,
우선 **음원 정보 검색**을 해봐요
- 02 권리자를 찾았다면 Step by Step으로
음원 사용 허락을 받아요
- 03 **외국 음악의 저작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04 엔딩 크레딧, 이제는 정확하게
권리자와 출처를 표시해요



음원을 활용하고 싶다면, 우선 음원 정보 검색을 해봐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www.findcopyright.or.kr)



1 검색창 접근하기

첫 화면의 검색창에 제목 또는 저작자 명을 입력해서 **통합 검색 결과**의 '음악저작물' 부분을 확인하거나,

'권리사찾기 정보시스템' 메뉴에 있는 '분야별 권리사 찾기' 서비스를 통해 상세 검색

2 검색 칸에는 가수명, 활동명, 곡 제목 등과 같은 음원 정보를 입력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잘 찾아볼까요?



3 원하는 음원의 요약정보 중 '위탁관리업자' 부분을 확인

권리사 찾기 정보 시스템 검색결과

음악저작물 (569)

1. SODA POP
 요약정보
 수록 앨범명 : KPop Demon Hunters (Soundtrack from the Netflix Film) / KPop
 가수 : KPOP DEMON HUNTERS CAST, DANNY CHUNG, SAJA BOYS, ANDREW CH
 작사 : VINCE, 최수정 (DANNY CHUNG, KUSH)
 작곡 : 김진영 (DOMINSUK, KUSH)
 원곡 : 김진영 (DOMINSUK, KUSH)

관리 단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네요?
 그렇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웹사이트로 이동

음원명	SODA POP
저작자명	작곡 : VINCE, DOMINSUK, KUSH
상연자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연자 정보' 항목은 가수나 악기 연주자와
 관련한 '저작권집권'의 권리자 정보예요

4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www.komca.or.kr) 접속

5 '저작물검색' → '전체검색' or 메인 화면 '저작물 검색'에 정보 입력 후 검색



6 분류 A는 작사가, 분류 C는 작곡가, 분류 AR은 편곡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누가 작곡했고 누가 작사했는지 전부 확인할 수 있겠지요? 협회관리가 '관리'이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청하면 되겠군요

기사주소: HEY HEY HEY HEY [가수명 : KPOP DEMON HUNTERS CAST, DANNY CHUNG, SAJA BOYS, ANDREW CHOI, NECKWAV, KEVIN WOO, SAMUIL LEE]

공표일자 : 2025-06-20

앨범명/프로그램명 : KPop Demon Hunters (Soundtrack from the Netflix Film) / KPop Demon Hunters / 게임대은 원타스

분류	저작자명	권리출판사	양수자명	승계자명	협회관리
A	VINCE(10015625)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주식회사			관리
A	대니얼(DANNY CHUNG)(19022990)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주식회사			관리
A	KUSH(W0528100)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주식회사			관리
C	24(10009811)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주식회사			관리
C	VINCE(10015625)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주식회사			관리
C	DOMINSUK(10025173)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주식회사			관리

음악의 저작자는 '작곡자/작사자/편곡자'이며, 가수는 저작자가 아닌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해요! 영상에 음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수의 목소리가 함께 포함될 예정이라면 가수의 가창, 음반의 유통 등과 관련한 '저작인접권' 개념도 미리 확인하고 해결해야 안전해요

권리자를 찾았다면 음원 사용 허락을 받아보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www.komca.or.kr)



1 거래처 회원으로 가입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어요

2 온라인 회원 가입

가. 홈페이지 우측 최상단 회원가입



2 온라인 회원 가입

나. 거래처 > 아이핀 인증 > 필수 기재 사항 작성
회원 가입 과정에서는 아이핀 인증이 필요하니 아이핀을 미리 준비해요



3 이용 허락 신청

거래처회원 > 영화이용허락신청 > 이용허락신청



*영화 제작이 아니더라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준으로는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음원을 활용할 때 일반적으로 '영화 온라인 사용허락' 절차로 진행하게 돼요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니, 담당자와 미리 상담하는 것도 좋아요)

4 신청 후 '심사 완료'되었다면,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협회 안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해요

(이용 규모와 형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의 비용이 발생해요)

회원 가입 없이 허락 신청을 하고 싶다고요?

1 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자료실' > '이용허락신청서식' > '신청서 다운로드'

*일반적인 영상을 제작할 때는 '방송·웹캐스팅·영상물 이용허락 신청' 카테고리의 '영화' 서식을 다운로드해요



2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이메일 제출해요

이메일 film@komca.or.kr 전화 02-2660-0504

3 신청 결과 승인되었다면, 사용료를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고 최종 결과를 확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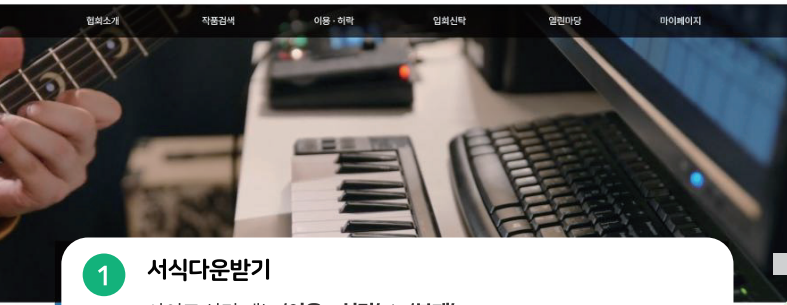


권리자를 찾았다면 음원 사용 허락을 받아보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www.koscap.or.kr)에 접속

KOSCAP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The Kore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1 서식다운받기

사이트 상단메뉴 '이용·허락' > '복제'

일반적인 영상을 제작할 때는 '영화' 서식을 다운로드해요

2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요

이메일 mech@koscap.or.kr, 팩스 02·333·8767, 전화 02·333·8766

3 신청 결과 승인되었다면, 사용료를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고 최종 결과를 확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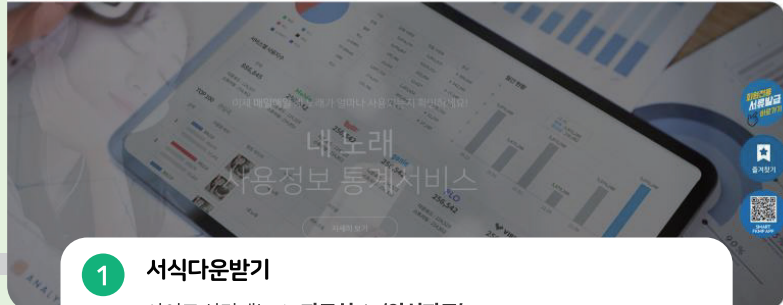
권리자를 찾았다면 음원 사용 허락을 받아보자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www.fkmp.kr)에 접속

Associ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
한국음악실연자협회

ABOUT US | 공연연 활동 | 임의 및 저작권정보 | 회원탈퇴 | 자료실 | 소식



1 서식다운받기

사이트 상단메뉴 > 자료실 > '양식자료'

일반적인 영상을 제작할 때는 '복제 사용신청서(영성문)' 서식을 다운로드해요

2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고 '청구내역서'를 확인해요

이메일 kgcstyle@fkmp.kr, 전화 02·2659·7230

담당자 변경에 따라 접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

3 신청 결과 승인되었다면, 사용료를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고 최종 결과를 확인해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내가 찾는 음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있을까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음원 중 함께하는음악저작권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두 협회에 의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는 작곡가와 작사가도 적지 않으니, 미리 참고하세요

음원 비용 어느정도 하나요?

본격적인 상업 이용이 아니라면 일반적 사용에 대한 비용은 10만 원 이내 수준이니, 번거롭더라도 공식 허락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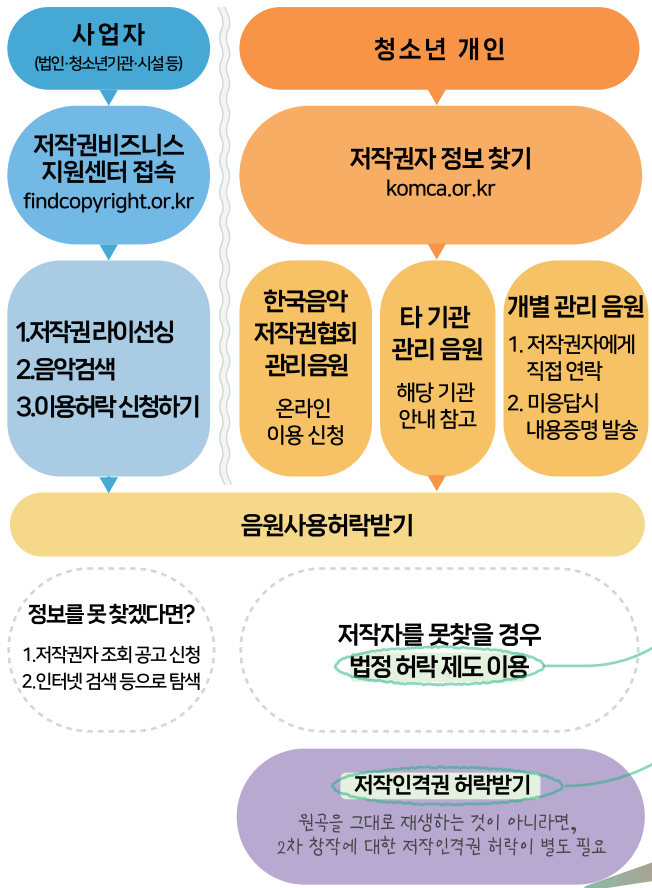
YouTube콘텐츠 음원들은 다 허락을 받고 쓰는 건가요?

YouTube, SOOP 등 일부 플랫폼에서는 음원 관리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라서 별도의 허락이 필요 없지만, 협약된 음원을 활용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받기

- ①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번역자(번안곡), 가수, 연주자(악기 연주곡) 등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요
- ② 권리가 음원 관리 단체에 관리를 맡겨둔 상태(신탁)라면 해당 단체에 이용 허락을 받아보아요
- ③ 관리 단체가 아닌 개인이 저작권(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음원이라면 권리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해요
- ④ 음원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가사를 바꾸는 등 변형을 가한다면 권리자에게 '저작권격권'을 따로 받아야 해요

정리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 전체 개요



아무리 찾아도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때 "법정허락 제도"

1.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국가에서 저작권자 대신 허락하는 제도로 '법정허락'이 있어요
2. 허락을 받으려는 시도 등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야하며, 허락 과정에서 보상금을 납부하게 되어요
3.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음원 이용 허락을 받았어도 조심할 게 또 있다! "저작인격권"

1.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용하거나 변형을 가한다면,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해요. (음원을 활용할 때 저작자의 창작 의도와 다르게 왜곡될 수 있으므로)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음원 관리를 맡긴(위탁한) 저작자들 중에는 청소년에게 인격권까지 미리 허락한 사람도 많으니, 부담없이 정확하게 권리를 확인해 보아요

! 주의

허락 받는 행위와 별도로, 음원 파일은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해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으면서 파일을 함께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음원 확보 방법!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에, 합법적인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멜론, 지니 등)를 통해 구매해도 좋아요



외국 음원의 저작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 음악은 자유롭게 써도 되는 것이 아니었나요?

- 저작권은 **베른 협약**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보호 받아요
- 저작권산권 보호기간, 구체적 조건은 국가마다 달라요
- 보호 기간이 서로 다르면, 보통은 더 짧은 기간을 적용해요
- 외국의 저작권자도 우리나라 변호사와 소송할 수 있어요

외국 음원 저작권 허락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신탁관리중인 외국 단체나 권리자**에게 연락해 보아요
- 국내 신탁 단체에서 관리한다면 해당 단체에 문의해요
- 유튜브 영상에 활용할 경우 Content ID에서 처리돼요



ASCAP (미국)



GEMA (독일)



JASRAC (일본)



MCSC (중국)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외국 주요 음원 신탁 단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komca.or.kr](#) > 협회소개 > 회원 및 업무현황 > 상호/일방적관리계약에 따른 외국지역 이용허락업무)



엔딩 크레딧, 이제는 정확하게 권리자와 출처를 표시해요

출처 표시, 이제는 당연하죠?

-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았어도 **출처와 저작자는 정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 출처는 '이 콘텐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이에요, 최초 출처를 최대한 조사하여 입력해 주세요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져다 활용할 때는 출처 외에도 저작자 정보를 남겨야 해요
-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서로 다른지도 확인해요

*저작자와 저작권자

1.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의미하며, 창작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2.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현재 기준으로 누구에게 이용 허락을 받는지와 관련돼요
3.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리이니,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를 수 있어요
4.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서로 다를 때는 엔딩 크레딧에는 모든 정보를 표시해야 안전해요

엔딩 크레딧에 곡 이름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었나요?

-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어요.
- 그러나, 곡 이름과 가수 이름만으로는 저작권 표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이기 때문이에요
- 저작인격권 중에 '성명표시권'이 있으니 저작자(창작자) 정보도 정확히 표시하세요



엔딩 크레딧, 이제는 정확하게 권리자와 출처를 표시해요

엔딩 크레딧에 표시하는 음원 정보는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 ‘음원제목’, ‘작곡가이름’, ‘작사가이름’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서로 다르다면 ‘**저작재산권자**’ 항목을 **별도로 표시**해요
- 가수명은 ‘**저작인접권자**’ 등으로 표시해요.
- 가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MR 음원이면 가수 이름(저작인접권자)을 생략해도 돼요

*엔딩 크레딧 음원 표기 예시

곡명 : Blue Valentine | 가수 (저작인접권자) : NMiXX

앨범 : NMiXX 1ST FULL ALBUM (Blue Valentine)

작곡 : KASS, 이혜술, BENSON STEPHAN LEE, GIA TIFFANY KATHRYN

작사 : 문성리, DANKE1, DANKE3, MILENA, J14, YOURA, 장채원, 최지윤, 설아(SEORA), 하윤아, 극지원

음원 정보를 표시할 때 더 참고할 내용이 있나요?

- **노래의 저작자**는 기본적으로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와 작사가**예요 (싱어송라이터 제외)
- 노래방에서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표시되는 곡 정보 내용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 같은 제목의 노래가 서로 다른 버전으로 발표될 수도 있으니, 앨범명도 기재하면 더 좋겠지요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영상이 아닌데도 엔딩 크레딧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나요?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영상이라면 상업성 여부와 상관 없이 저작권을 지켜야 해요
-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써서 저작재산권 문제를 해결했다라도, 저작인격권은 별도로 지켜야 해요
- 허락받은 상황에서도 엔딩 크레딧에 저작자 이름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저작권위원회 (KCCP)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위탁관리업

5. BLUE VALENTINE

요약정보

수록앨범명 : NMiXX 1ST FULL ALBUM (Blue Valentine)

가수 : NMiXX

작사자 : 문성리,DANKE1,DANKE3,MILENA,J14,YOURA,장채원...

작곡자 : KASS,이혜술,(사)BENSON STEPHAN LEE,(사)GIA TIFFANY KATHRYN

위탁관리업자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좌)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검색결과

(우)한국저작권위원회 검색 결과

어디서 검색해도 상관 없지만, 모든 저작자를 빠짐 없이 표시하면 안전하고 좋겠지요?

트렌드 미디어, 인터넷에서 유행하면 괜찮나요?

01 **밈(meme),**
유명하다고 그냥 갖다 쓰면 안 돼요

02 유행하는 밈으로 **유튜브 영상** 만들고 싶다고?

밈(meme), 유명하다고 그냥 갖다 쓰면 안 돼요



밈(meme) : 패러디나 흉내내기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콘텐츠를 의미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될만한 사건이나 흥미로운 요소 등을 주로 다루는 편이에요

유명한 밈이면 괜찮지 않나요?

- 밈 홍보에 도움이 되더라도 **저작권은 지켜야 돼요**
- **영상저작권** : 공개 시부터 70년간 저작권 보호돼요
- 출처를 자세히 잘 남겼어도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신고 안 당하는 사람은 뭐 때문이에요?

- 가장 큰 이유 : **인지도 상승**
- **비영리·공익 목적**이어도 허락 받는 것이 원칙

밈 잘못 쓰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 **10-13세** : 보호처분 가능
- **14세 이상** : 징역·벌금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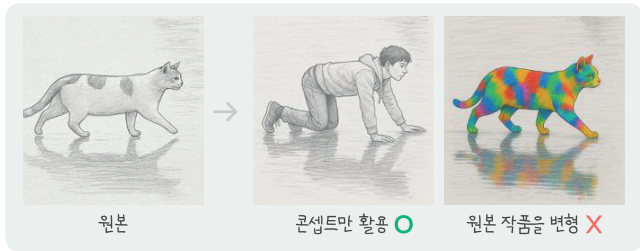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유행하는 밈으로 유튜브 영상 만들고 싶다고?

밈 활용, 어느 수준까지 괜찮나요?

- 원본을 그대로 쓰면 문제될 수 있어요
- 구체적인 창작은 스스로 해야 해요
- **유행어, 추상적 콘셉트** 사용은 안전해요



밈 노래 일부를 영상에 넣어도 되나요?

- 짧게 써도 원칙적으로는 **허락이 필요**해요
- **밈 영상 속 음원** 또한 음원 저작권자를 찾거나 플랫폼을 통해서 허락을 같이 받아야 안전해요

유튜브에서만 쓸건데, 그래도 안 되나요?

- 유튜브에서만 업로드·공개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해요(유튜브 콘텐츠 식별 기술 Content ID 기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 음원**은 안전해요
(2010년에 음저협-유튜브 간 협약 체결)
- **원본 사용**: 영상 업로더는 수익 얻지 못해요
(해당 광고 수익을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
- **커버 제작**: 광고 수익이 여러 곳에 분배돼요
(음악 저작권자, 구글, 영상 업로더 등이 나눠 가짐)
-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할 땐 그 플랫폼에서 정하고 있는 규칙**
(이용약관 등) 중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요

저작권 상식
이럴 때는 관찮아요

- 1 부수적 복제 : 영상 촬영 시 주변에서 재생되는 음악이 어쩔 수 없이 함께 녹음된 경우



우연히 함께 녹음됨 ○



의도적으로 음악을 녹음 X

- 2 비영리 공연 : 돈을 주고받지 않는 비영리 목적의 버스킹 공연 등 (영상 업로드 등을 통한 공개는 허락 필요)



무상 공연 ○



유상공연 X

폰트, 영상자막 만들 때 특히 조심히 사용해요

- 01 **폰트** : 이용약관을 통해 제대로 사용해야 할 저작물
- 02 안전한 폰트 사용은 스스로넷과 공유마당에서 해요
- 03 **컴퓨터 프로그램** : 불법 복제 프로그램, 소송으로 이어져요



폰트: 이용약관을 잘 확인하면서 제대로 사용해야 할 저작물

무료 폰트는 자유롭지 않나요?

- 무료 폰트라도 **상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해요
- **개인적 이용만** 허락된 상태라면, 공개용 제작에서는 쓰면 안돼요
- **정확한 허락 범위**는 폰트 설치 시 제시되는 **이용 약관**에서 확인해요 (출처 기재, 상업적 이용 시 사전 승인, 로고 활용 금지, 활용 수단 제한 등)

직접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폰트가 아닌,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설치된 폰트 파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슈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이용 약관 위반'에 해당 하는 경우가 많아요

폰트 관련 상식

- 폰트는 기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에요
- **폰트 파일 무단 설치 시 저작권 위반이 성립해요**
- **폰트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 x**
- 폰트를 이용한 **인쇄물**은 폰트 **저작권 보호 대상 x**
(인쇄된 문서는 그 내용을 어문저작물로 보호)
- 일부 폰트 모양은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있어요

문서 프로그램 기본 폰트는요?

- 한컴오피스, MS 워드 등 **응용 프로그램 설치 시 함께 설치되는 폰트**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함께 설치되는 폰트의 사용도 불법 행위가 돼요

네이버 글꼴 저작권 안내

네이버에서 제작한 나눔 글꼴과 마루 부리 글꼴, 클로버 나눔손글씨(이하 네이버 글꼴)의 지적 재산권은 네이버와 네이버 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네이버 글꼴은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 상업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글꼴은 본 저작권 안내와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해서 다른 소프트웨어와 번들하거나 재배포 또는 판매가 가능하고 자유롭게 수정, 재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글꼴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 출처 표기를 권장합니다. 예) 이 페이지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 고딕 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글꼴을 사용한 인쇄물, 광고물(온라인 포함)의 이미지는 나눔 글꼴 프로모션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당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 조건은 **네이버 나눔 글꼴 라이선스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마루 부리 글꼴과 클로버 나눔손글씨도 나눔 글꼴과 같은 오픈 라이선스 글꼴로 동일한 저작권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 한컴오피스와 함께 설치되는 폰트의 경우, 한글과컴퓨터 소유가 아닐 수도 있으니 폰트별 약관을 잘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 폰트의 '이용 약관'을 복사한 후 파일이나 인쇄물로 보관하면 법적 분쟁 대비에 유리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안전한 폰트 사용은 스스로넷과 공유마당에서 해요

스스로넷 (www.ssro.net)에서 안전한 폰트 쓰기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스스로넷)은 청소년 디자인 제작 전문 그룹을 통해, 글꼴(서체)를 제작하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 배포되고 있는 서체는 출처 표기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 단, 서체를 다른곳에 올려서 재배포 하는 행위는 금지 합니다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 미디어 교육, 미디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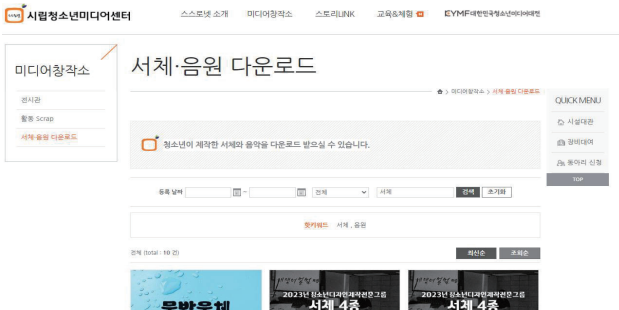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 안전한 폰트 쓰기

- '공유마당'이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안심 저작물 공개 웹서비스입니다
-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글꼴** 등을 제공합니다
- **만료저작물**(저작권산권 보호가 종료된 저작물), **기증저작물**(국가에 기증된 저작물)등 완전히 자유로운 저작물도 있어요



폰트다운받기

스스로넷 사이트 > '미디어창작소' > '서체음원다운로드' 클릭



폰트다운받기

공유마당 사이트 > '무료글꼴' > '민간안심글꼴(OFL) 또는 '안심글꼴 파일 서비스' 클릭



공유마당 OFL 폰트는 출처 표시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OFL 폰트가 아니라면 저작권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용 조건을 확인한 후 해당 내용에 따라 활용해야 해요

The screenshot shows the '공유마당' website interface. The '공유마당 OFL 폰트' section is active, displaying a list of font categories including '2023년 청소년디자인제작전문그룹 서체 4종'.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 프로그램, 소송으로 이어져요

왜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나요?

- 불법 복제 프로그램 설치시 저작권 위반!
- 인터넷 연결 시 불법 복제 이력이 전달되어서 이를 증거로 법적 조치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 SNS에 노출된 스크린샷이 신고되기도 해요

* 교육용/학생용 라이선스의 경우, 일부 소프트웨어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쓸 수 있게 설정되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 특혜가 적용되는 조건이 어떤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조건 그대로 지켜야 안전해요

* 기업용/상업용이라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법인으로 한정되는지 개인사업자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구독형 프로그램 관련 문제가 있나요?

- 구독 종료 후 사용 시 계약 위반!
- 기관·기업에서 개인용을 쓰면 계약 위반이에요
- 지정된 기기 수를 초과해서 설치하면 계약 위반이에요
- 계약 위반 시 계정 사용 제한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IV

이제는 귀찮아도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세상

01 저작권,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02 누군가 내 저작권을 침해했나요?

03 커버(cover) 콘텐츠도 허락 받고
만들어야 해요

1 저작권 등록신청 화면 접근

창작물을 새로 등록할 때는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까?' 질문에 '아니오'를 선택해야 해요.

저작권 등록 신청서

] 권리 등록 대상 저작물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경우 해당 등록부호를 검색하는 페이지입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등록하실 저작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예

다음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페이지를 차례대로 채우고, 등록하려는 저작물의 파일을 첨부한 후 제출해요

1 저작물

* 인간의 창작력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생성형 인공지능(GAI) 산출물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제외하고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의무등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목 (제목)	예) Candy(사탕) *외국어 제목은 한글을 함께 기재.
* 종류	음유 <input type="checkbox"/> 선택* <input type="checkbox"/> 선택* <input type="checkbox"/> 선택*
* 내용	저작물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 * 총본문 설명이 워드록 자체의 기체(1000자 이하) Byte = 1/3000 (한글 1글자 3Byte) * 여러 건 신청 시 각 저작물마다 내용은 상이하게 기재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신청서 기재 방법 저작물정보 송과자

2 등록사항

등록부호	
계속기간행동 동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input type="radio"/> 예
공표여부	<input type="radio"/> 아니요 <input checked="" type="radio"/> 예 * 공표사항을 등록하는 경우 제3자가 위법하여 인권을 침해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컴퓨터프로그램은 제외) * 공표연행행동 내용은 등록하고자 할 경우 다시 등록신청 절차의 비공개 사항이므로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저작권을 침해했나요?



저작권 피해를 입었다면 저작권 상담을 받아보세요



- **한국저작권위원회** : www.copyright.or.kr(사업 > 저작권 상담), 1800-5455 예약 후 분사 또는 서울사무소 방문
저작권 등록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저작권보호원** : www.kcopa.or.kr (참여마당 > 저작권보호상담), 1588-0190
저작권 보호 관련 질문, 상담 등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습니다.
주주 묻는 질문 > > **저작권 보호 상담**

* 한국저작권보호원 웹사이트(www.kcopa.or.kr)에서도 저작권 보호 상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커버(cover) 콘텐츠도 허락 받고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을 확정해요(권리 침해 중지, 금전적 손해배상 등)
- 확산방지가능성, 원상복구가능여부등 **현재 상황을 침착하고 냉정하게 파악**해요
- **저작권 소유 증거를 객관적으로 확보**해요
- 법적 대응 시, **소송 제기 기한***에 주의!

소송 제기 기한 : 민사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또는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형사사건은 '우발적인 위반 사건일 경우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고려할 점은?

- 금전적 손실(돈과 관련한 손해)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법정대리인(보호자)와 반드시 충분히 논의**해요
- **저작권 상담**으로 제대로 준비해야 안전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보호원)

상업 목적이 아니어도 허락 받아야 하나요?

- 커버 콘텐츠 창작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해요
- 공개 목적이면 사전에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해요
- 광고 수익이 의도치 않게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저작권리자와 논의하는 것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 배경음악은 괜찮다는데?

- **커버 영상에 음악을 활용하면 광고수익이 여러곳으로 분배**돼요
(음악 저작권자, 구글, 영상 업로더 등)
- **음악 원본 그대로 사용 시 업로더는 수익을 얻지 못**해요
- **음원의 저작권자는 Content ID 설정에서 저작물 사용 조건**
(수익 공유, 차단 등)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어요

YouTube Content ID : 유튜브에 게시되는 영상들에 포함된 소리를 자동 분석해 음원 정보를 탐지하는 시스템

다른 참고 사항은 없나요?

- 커버 영상에 음원을 사용하면서 **가수 목소리**도 함께 활용하려면 **가수의 허락**도 받아야 해요
- 유튜브-신탁 단체 간 협약은 아직 음악 분야에서만 존재해요
- **안무**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저작권자와 직접 협의**해야 해요



커버 콘텐츠 제작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여러 이슈와 연결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V

저작권 체크리스트 콘텐츠 만들기 전&후 안심 체크리스트 확인해보기

☑ 영상 저작물(영화 창작 등)에 배경음악을 사용하나요?

- 다른 사람의 음악 저작물을 활용한다면, 아주 짧게 쓰더라도 저작권을 지켜야 해요('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음원 정보 검색 가능)-8p

○ 활용하려는 저작물을 그대로 쓰지 않고 수정할 예정인가요?

- 수정해서 활용할 때는 저작자(창작자)에게 저작권권(동일성유지권)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해요-19p
-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저작물 이용 허락만 잘 받아도 돼요

○ 결과물을 YouTube, Instagram, SOOP 등의 플랫폼에 공개하나요?

- 플랫폼별로 저작권 관련 규정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니, 플랫폼 이용 약관을 미리 확인해요-27p

○ 제작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자(촬영감독, 조연출 등)가 있나요?

- 창작자(작가)의 지시에 따라 보조 작업만 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어요

○ 결과물에 타인의 얼굴 또는 상표가 포함되어 있나요?

- 다른 사람 얼굴(초상)이나 상표는 사전에 활용 동의를 받고, 동의 못 받았으면 모자이크 처리해요

☑ 혹시, 영화를 만들면서 엔딩 크레딧을 작성하고 있나요?

- 엔딩 크레딧에 출처를 남길 때는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남겨야 해요 -22p

○ 타인의 저작물을 혼자 보거나 가족끼리 쓸 예정인가요?

- 혼자 또는 가족끼리만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고 패드 또는 스마트폰에 복제(mp4영상, 파일복제)파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돈 주고 산 영화 파일을 가족과 같이 집에서 보는 건 문제 없어요
- 그러나, 단독방, 구글 드라이브에 무분별한 공유나 돈을 받고 거래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예요!
-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포토샵, 프리미어 등)은 무조건 각각 정품을 사서 사용해야 해요.

○ 어떤 식으로든 돈이 오고가지 않고 대가성 없이 활용할 것인가요?

- 버스킹 공연 등에서 연주하거나 노래할 때 활용하는 것은 괜찮아요(단순 재생불가)-28p

○ 저작자(창작자)와 저작권자(현재 권리 소유자)가 서로 다르나요?

- 저작물 활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 저작물 변형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요-19p
-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같다면 창작자에게 연락해 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요

☑ 타인의 저작물을 학교 수업 목적으로 활용하나요?

- 타인의 저작물은 당연히 허락 받고 써야 해요.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학교 교육 목적, 법적으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교육훈련 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해서 사용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 자료로 사용할 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출처는 남겨야겠죠? 저작물을 어디서 가져왔고 누가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 허락받는 과정에서 이용 동의서나 사용허락 증명서를 작성하나요?

- 권리자에게 계약서를 통해 허락을 받게 된다면, 해당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해요
- 서류 계약이 아니라면,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녹음, 이메일, 메시지 등)를 잘 보관하세요

○ 기존에 있는 타인의 저작물(음원, 영상, 그림 등)을 다시 재가공(편곡, 부분적으로 잘라 클립으로 사용) 할 경우가 있나요?

- 저작물 사용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이차적저작물작성' 동의 또는 '응용 창작 동의' 등을 포함해야해요.
- 최초로 2차 창작 관련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2차 창작하게 될 때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해요.
-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물(영상, 음악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은 2차 창작에 해당해요.

AI(인공지능) 생성물 이용 가이드

- 저작권은 '인간'의 생각·느낌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라서, 인공지능 작품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 명령어만 입력했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작품인데 자기가 만들었다고 허위로 표시하면 안 돼요
- 창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활용했다면, 어떤 서비스를 언제 활용했는지도 남겨요
- 가능하다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했던 기록이나 흔적을 계속 보존하는 것은 어떨까요
- 혹시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라면,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 약관도 확인해 봐요
(라이선스별로 이용 조건이 다르거나 영리적 활용 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 인공지능 생성물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공적인 대회에 제출할 때는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Copy Killer 등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인공지능 기본법> 및 시행령 제22조를 참고하세요

자료 출처

- find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지원센터 (마지막 접속 : 2025.12.27)
- www.komca.or.kr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마지막 접속 : 2025.12.27)
- www.koscop.or.kr :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마지막 접속 : 2025.12.27)
- www.fkmp.kr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마지막 접속 : 2025.12.27)
- 저작권법 제11조 내지 동법 제15조 : 저작권법 중 저작권격권 관련 내용
- 저작권법 제50조 : 저작권법 중 법정허락 제도 관련 내용
- www.wipo.int/wipolex/en/text/283693 : Berne Convention (베른 협약) (마지막 접속 : 2025.12.27)
- 김세중, "웹툰에서 밈(meme)의 차용에 따른 패러디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문화에니메이션연구, 2021.3. (제62호), 183-189면 : 밈 관련 내용
- 저작권법 제42조 : 저작권법 중 영상저작물의 보호 기간 관련 내용
- www.mdilbo.com/detail/c3QycN/608828 : 아인시대 저작권 관련 사건 보도 (마지막 접속 : 2025.12.27)
- www.mk.co.kr/news/broadcasting-service/9939563 : 아인시대 저작권 관련 수익 제한 사례 (마지막 접속 : 2025.12.27)
-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41609484643420 : 음저협-유튜브 간 협약 관련 보도 (마지막 접속 : 2025.12.27)
- support.google.com/youtube/answer/6013276?sjid=11040684255792780292-NC : 유튜브 고객센터 내 'Content ID 소유권 주장' 관련 내용(마지막 접속 : 2025.12.27)
- 저작권법 제45조 : 저작권법 중 저작재산권 양도 관련 내용
- 저작권법 제46조 : 저작권법 중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 이용 허락 관련 내용
- 저작권법 제35조의3 : 저작권법 중 부수적 복제 관련 내용
- www.edu-copyright.or.kr/user/bbs/selectBbsView.do?searchBbsinfo_tcd=19&pageIndex=1&menuId=258&selectedId=2481 : 부수적 복제 관련 사례 1 (마지막 접속 : 2025.12.27)
- blog.naver.com/kcc_press/221681243970 : 부수적 복제 관련 사례 2 (마지막 접속 : 2025.12.27)
- 저작권법 제29조 : 저작권법 중 비영리 공연 관련 내용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11. 28. 선고 95가합11403 판결 : 폰트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한 대표 판례
- www.ssrone.net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마지막 접속 : 2025.12.27)
- gongu.copyright.or.kr : 공유마당 (마지막 접속 : 2025.12.27)
- www.hancomdocs.com/ko/?NaPm=ct%3Dmjn628g9%7Cci%3Dcheckout%7Ctr%3Dds%7Ctrx%3Dnull%7Chk%3D3b2404388f575612eb677cd269ac936d5c32c1f7 : 한컴오피스 구독형 상품 안내 (마지막 접속 : 2025.12.27)
- www.adobe.com/kr/creativecloud/plans.html#edu-all-apps-purchase-plans : Adobe 특별 플랜 (마지막 접속 : 2025.12.27)
- www.cros.or.kr : 저작권 온라인 등록 (마지막 접속 : 2025.12.27)
- www.kcopa.or.kr :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사이트 (마지막 접속 : 2025.12.27)
- 사례이미지는 chat GPT로 제작 하였습니다

* 각 출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요소가 있습니다.

발행일

2025년 12월

주소

(우)0432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5
(갈월동 101-5)

연락처

TEL. 02-795-8000
FAX. 02-798-0014

발행인

이종익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관장)
김길호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부장)
유정민(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사업부장)
견상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팀)
이다운(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팀)
이유승(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

자문위원단

이유승(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
신봉기(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심의팀)
이일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편집인

이다운(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팀)
이유승(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
안희라(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기획홍보팀)